

청소년수련관 관리규정

제정 2007.12.24	개정 2017.04.11
개정 2008.10.27	개정 2018.03.01
개정 2009.04.28	개정 2018.12.14
개정 2010.05.13	개정 2019.06.25
개정 2011.08.16	개정 2021.07.20
개정 2012.10.04	개정 2023.03.15
개정 2013.04.19	개정 2023.06.19
개정 2013.08.13	개정 2024.03.13
개정 2014.01.21	개정 2025.03.17
개정 2014.12.10	개정 2025.04.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유스센터(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관련법 및 재단 제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4.1.21., 2017.4.11., 2025.3.1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1.>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 가.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 1) “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청소년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활동을 말한다.
 - 2) “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3) “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4) “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 나.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다.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시설의 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7.4.11., 2025.3.17.>

1.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
2. 청소년 수련거리의 개발 및 수련활동의 운영
3.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4. 청소년의 신상 및 생활문제 상담 지도
5. 청소년을 위한 기념행사 및 문화·체육 사업
6. 청소년자치기구의 운영
7. 청소년 복지증진과 지역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
8.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시설의 장은 기계, 전기, 건축물 등 유스센터의 주요시설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도 말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1., 2025.3.17.>

제5조(프로그램의 운영 계획) ① 시설의 장은 매년 초 당해연도에 운영할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1., 2025.3.17.>

② 수립된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매 분기마다 필요시 조정여부를 검토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① 시설 운영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유스센터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16., 2025.3.17.>

② 위원회는 각 시설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위원장 2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6., 2017.4.11., 2018.3.1., 2019.6.25.>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들의 활동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대표자가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은 대표이사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8.13., 2017.4.11.>

④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8.1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개정 2011.8.16., 2017.4.11.>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16.>

⑦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부서 총괄매니저로 한다. <개정 2011.8.16., 2024.3.13.>

제7조(분야별 업무) 삭제<2013.4.19.>

제 2 장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제8조(시설관리) 유스센터의 제반시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점검·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3.17.>

1. 수영장 관리
2. 보일러 관리
3. 도시가스 관리
4. 정화조 관리
5. 물탱크 관리
6. 전기시설 및 비상발전기 관리
7. 건축물 관리

제9조(보험가입) ① 각 시설의 장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관련법에 의한다. <개정 2017.4.11.>

제10조(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분야별 세부규칙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5.13., 2017.4.11., 2018.3.1.>

1. 평생교육
2. 생활체육
3. 청소년활동
4. 청소년 보호·복지·상담
5. 시설대관 및 물품대여
6. 기타(수영장, 헬스장, 키박스, 락카, 기전실, 회원접수처, 셔틀버스 등)

제 3 장 회원 및 이용료

제11조(운영규약) ① 삭제 <2014.12.10.>

② 각 시설은 자율적이고 특색있는 운영을 위하여 정관 및 규정을 바탕으로 시설 운영규약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4.19.>

[제목개정 2014.12.10.]

제12조(시설 이용의 거부) ① 시설 이용자 가운데 시설이나 강좌의 건전한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의 관리유지, 안전관리 및 선량한 이용자를 위하여 강제퇴거 및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16., 2017.4.11.>

② 전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후에도 시정이 안 될 때에 한하여 거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료의 징수) ① 유스센터 내 모든 시설과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단, 청소년 활동 및 보호·복지 프로그램 이용자의 경우 실비 이내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8.16., 2012.10.4., 2025.3.17.>

② 이용료의 징수는 매년 대표이사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승인한 시설·프로그램별 금액으로 하며, 임의로 감면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청소년 및 시설 이용자의 요구 등에 의하여 이용료를 승인받지 아니한 신규 개발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된 유사 프로그램 또는 다른 청소년수련관 및 유사 공공 시설의 이용료를 비교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와 회원의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의

할인, 장기등록에 따른 할인, 청소년에 대한 할인 등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4.28., 2011.8.16., 2012.10.4., 2017.4.11.>

③ 시장이 승인한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용자로부터 금액을 징수할 수 없으며, 최초의 이용료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요금을 징수한다.

제13조의2(이용료의 감면)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10.27., 2011.8.16., 2012.10.4., 2014.12.10., 2017.4.11., 2023.3.15., 2023.6.19.>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청소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청소년 또는 수급자의 가족 중 청소년

마.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중 청소년 단, 지원연령을 이 법에 대한 해당 기준으로 적용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수급자의 가족 포함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동반한 1명 포함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가족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또는 가족

바. 65세 이상 노인

사.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면

가. 청소년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나. 시가 후원하는 청소년·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다. 청소년 성장을 위하여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행사

4. 100분의 10 감면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월 이용료

[제목개정 2011.8.16.]

제13조의3(이용료의 반환) 제13조 규정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10.2., 2011.8.16., 2017.4.11.>

1. 삭제 <2017.4.11.>

2. 삭제 <2017.4.11.>

3. 삭제 <2017.4.11.>

[제목개정 2011.8.16.]

제13조의4(사용허가 및 범위)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② 각 시설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체육관, 강의실 및 기타 부대시설
2. 부대시설 : 각 시설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옥내·외 공간과 기타 부대시설

[본조신설 2017.4.11.]

[중전 제13조의4는 제13조의5로 이동 <2017.4.11.>]

제13조의5(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①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정지에 대하여는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8.10.27., 2011.8.16., 2017.4.11., 2025.3.17., 2025.4.21.>

② 삭제 <2025.4.21.>

③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신설 2008.10.27.> <개정 2017.4.11., 2025.4.21.>

[제목개정 2011.8.16.]

[제13조의4에서 이동 <2017.4.11.>]

제14조(이용료의 불입) 이용료 수입은 매일 징수 결의하며 다음 날 오전 중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까지 납입한다. <개정 2013.8.13., 2017.4.11.>

제 4 장 강사

제15조(강사의 운영) ①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하여 시설의 장은 강사를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0.5.13., 2014.12.10., 2017.4.11., 2021.7.20.>

② 정규강좌의 강사는 강사선정위원회가 심의하고 시설의 장이 채용한다. <개정 2009.4.28., 2010.5.13., 2014.12.10.>

③ 강사의 수당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개정 2011.8.16., 2014.12.10., 2021.7.20.>

[제목개정 2014.12.10., 2021.7.20.]

제16조(강사의 계약해지) <개정 2012.10.4., 2013.8.13., 2014.12.10., 2017.4.11.>

[제목개정 2014.12.10., 2018.12.14.]

<신설 2018.12.14.>

삭제 <2021.7.20.>

부칙(2007.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설립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설립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설립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5.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용료의 감면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홍보를 거쳐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이전의 명칭은 「조직 및 정원규정」의 명칭으로 본다.

부칙(2013.4.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 이전에 발생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7.4.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6.25.)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7.20.)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3.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6.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3.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3.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4.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 연락 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놓아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개인 보호 장구를 갖추어 두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당해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13. 당해 수련 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판넬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별표 2] 삭제 <2017.4.11.>

[별표 3] 삭제 <2017.4.11.>

[별표 4] 삭제 <2013.8.13.>